

미국 FDA의 통관정책과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미국 FDA의 통관정책 / 3

- | | |
|---|-------------------|
| 3 | 1. FDA 성격 및 주요 업무 |
| 4 | 2. FDA의 통관정책 |
| 5 | 3. FDA의 통관검사 절차. |

II. 미국 FDA의 통관거부 현황 / 7

- | | |
|---|-----------------------|
| 7 | 1. 주요국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현황 |
| 8 | 2.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현황 |

III.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 13

요 약

미국 세관의 통관 및 검역에 대한 기본원칙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무역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국민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7년 중국산 치약, 애완동물, 해산물, 장난감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미국 정부는 세관과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 연방 차원의 관련 기관들을 통해 수입품 검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세관이 FDA로 통보하는 수입물품(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정보는 FD0, FD1, FD2 등 3개의 코드로 분류되며, FD0 코드는 FDA의 별도 검토(Review)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 FD1 코드는 FDA의 관할 여부가 불분명하여 FDA의 검토(Review)가 필요한 품목, FD2 코드는 FDA에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한 품목을 의미한다.

2007년 기준, FDA 통관거부 건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1,920건), 인도(1,858건), 멕시코(1,671건), 영국(670건), 캐나다(618건) 순이며, 한국은 404건으로 1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를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4대 품목군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53%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의료기기가 뒤를 이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유로는 식품의 경우 제조공정 정보 미등록(위반 코드명 No process), 의료기기의 경우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D&C Act) 510조(j)항에 따른 기기 미등록(위반 코드명 Not Listed), 의약품은 승인받지 않은 신약(위반 코드명 Unapproved),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링법 미준수(위반 코드명 CSTIC LBLG)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통관거부 사유로 나타났다.

통관거부는 우리 수출업체에게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내 수입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FDA가 운영하는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 사이트에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히 입력하고, 특히 의료기기는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단계인 510(K) 신고가 필수로 요구된다. 또한 부주의로 인해 통관거부를 당할 경우,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우리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세관과 FDA의 통관 규정과 세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세관의 통관 업무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경험이 적은 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I. 미국 FDA의 통관정책

1. FDA 성격 및 주요 업무

- 미국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보건후생부(D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1927년 설립되어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시험·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FDA의 주요 업무는 신상품 검토, 감시, 표준과 규제, 조사, 집행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상품 검토 : 제품의 판매 전 안전성에 대한 시험소의 결과나 기업에서 행하는 동식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약품, 생물학 약제, 의료기기, 식품, 색소첨가제, 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 출시 전 검토가 이에 해당됨.
 - 감시 : 상품이 시판될 때 해당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문제점이나 새로 알려진 위험에 대하여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감시함.
 - 표준과 규제 :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함.
 - 조사 : 위험을 평가하고 발견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규제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조사결과는 표준을 제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집행 :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FDA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문제 해결 → 제조업체 리콜 → 물품 압수조치 순서로 집행함.

2. FDA의 통관 정책

- 미국 세관의 통관 및 검역에 대한 기본 원칙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무역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국민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뀔.
- 특히 2007년 중국산 치약, 애완동물 사료, 해산물, 장난감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미국정부는 세관과 FDA 등 연방 차원의 관련 기관들을 통해 수입품 검열을 강화하는 추세임.

〈2007년 미국의 중국산 상품 주요 제재내역〉

품목	내용
가짜 치약	○ 배경 - 미국 FDA는 호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중국산 치약에 글리세린 대신 부동액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DEG(디에틸렌글리콜)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치약에 대한 대대적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일부 주 저가매장(Dollar Plus 등) 등에 판매되고 있는 가짜 콜게이트 (Colgate) 치약 적발, 독성물질 DEG가 3~5% 검출됨.(2007.5월) *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치약시장은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 미국산이며, 중국산 수입규모는 350만달러(0.2%) 정도 ○ 미측 조치 - FDA는 해당 중국산 치약 90여만개에 대한 리콜 및 판매금지 조치 단행
완구류	○ 배경 -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Fisher-Price사의 '세사미스트리트', RC2사의 '토마스와 친구들', Martin Designs사의 '스폰지 밥' 등 유명 완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검출(2007.6월) - 미국 최대 장난감 전문 체인점인 Toys R us가 '베이비', '디즈니 베이비'란 상표로 판매해온 중국산 유아용 텍 비닐에서 기준치 초과 납검출(2007.8월) -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사가 3회에 걸쳐 납함유 중국산 장난감 2천여만개 리콜(2007.8~9월) ○ 미측 조치 - Toys R us는 납검출 터반이 판매를 중단하고 기관매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
식물성 단백질 (애완동물 사료용 밀단백 포함)	○ 배경 - 단백질 수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밀단백(밀에서 추출한 단백질)으로 제조한 사료를 먹고 수백마리의 애완동물이 죽는 사건 발생 (2007.3월)

식물성 단백질 (애완동물 사료용 밀단백 포함)	*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멜라민은 석유, 석탄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사람은 동물과 달리 멜라민을 체내에 축적하지 않아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FDA는 멜라민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미측 조치 - 중국산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사료 100여개 브랜드 전체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DWPE) 단행 *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 미국 FDA는 식품, 의약 및 화장품법(FFDCA)에 의거 해당 수입품의 오염, 라벨링 오기, 또는 기타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물리적 검사 없이 통관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

자료 :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2007) KOTRA 발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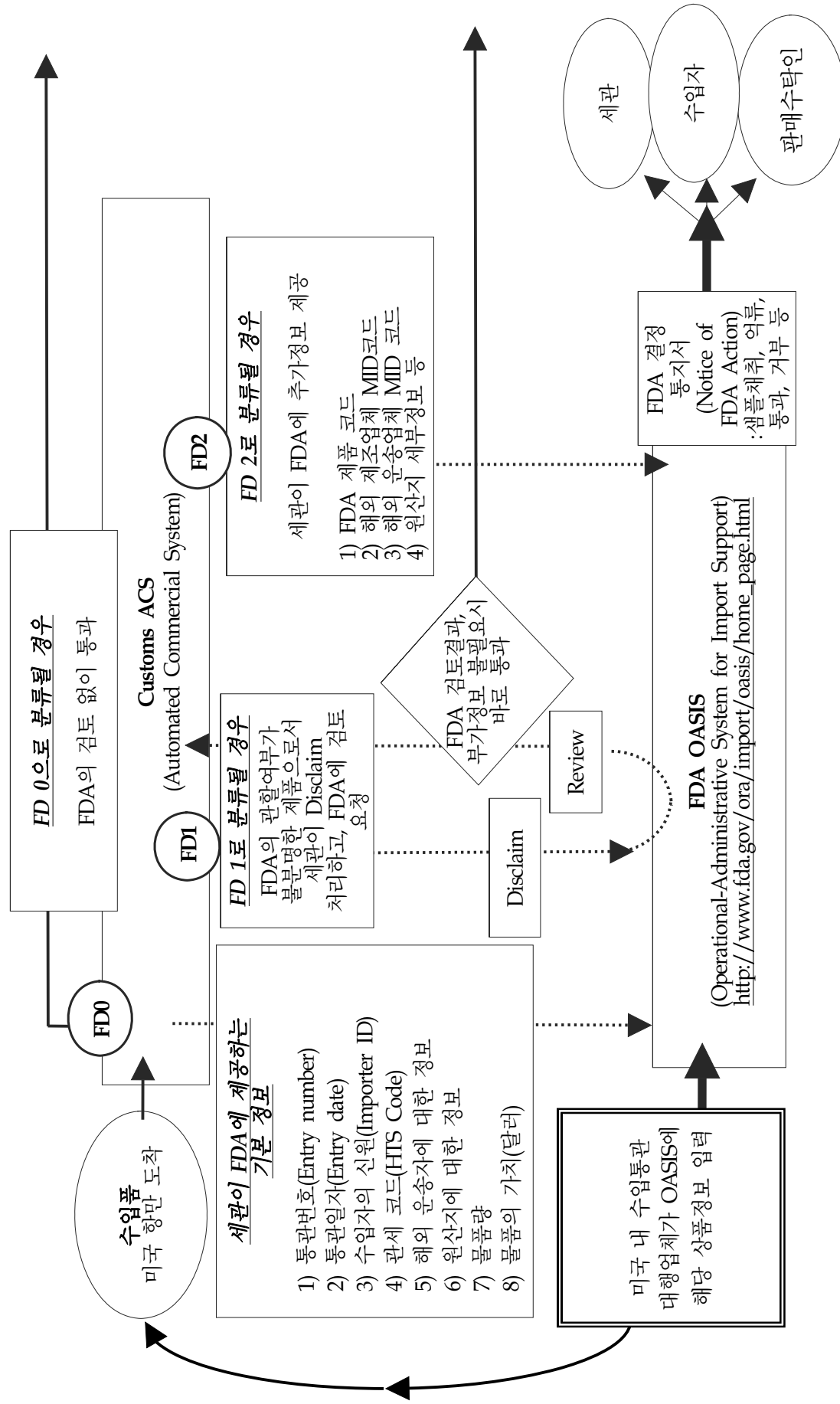
3. FDA의 통관검사 절차

- FDA의 Office of Regulatory Affairs(ORA)에서 작성한 내부 매뉴얼 (Regulatory Procedure Manual¹⁾)에 따르면, FDA의 통관검사는 미국 세관의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와 FDA의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어 있는 수입화물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
- 세관에서 FDA로 통보하는 수입물품 정보는 FD 0, FD 1, FD 2 등 3개의 코드로 분류되며, FD 0 코드는 FDA의 별도 검토(Review)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 FD 1 코드는 FDA의 관할 여부가 불분명하여 FDA의 검토(Review)가 필요한 품목, FD 2 코드는 FDA에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한 품목을 의미함.
- FD 2 코드로 분류될 경우, 세관은 FDA 제품 코드²⁾(HS 코드와 상이함.), 해외 제조업체 MID 코드, 해외 운송업체 MID 코드, 원산지 세부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1) FDA 직원용 매뉴얼로 이 매뉴얼의 9장(Import Operations and Actions)에 수입관련 상세내용이 나와 있음.(www.fda.gov/ora/compliance_ref/rpm/chapter9/ch9.html)

2) FDA Product Code Builder(www.accessdata.fda.gov/SCRIPTS/ORA/PCB/PCB.HTM)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미국 세관과 FDA의 차이점〉



II. FDA의 통관거부 현황

1. 주요국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현황

- 2007년 기준, FDA 통관거부 건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1,920건), 인도(1,858건), 멕시코(1,671건) 등으로 이들 3개국의 평균 통관거부 건수는 영국, 캐나다와 같은 4~5위 국가의 3배에 달함.
- 우리나라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404건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 및 일본보다 낮은 수준임.

〈국별 FDA 통관거부 건수(2007년 월별 기준)〉

순위	국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	중국	194	144	171	264	173	130	132	179	106	182	136	109	1920
2	인도	182	129	237	136	152	138	118	167	173	216	110	100	1858
3	멕시코	141	77	151	153	163	157	170	172	94	147	158	88	1671
4	영국	21	71	87	16	29	50	71	33	41	38	44	169	670
5	캐나다	29	46	19	34	62	56	83	56	50	46	75	62	618
6	도미니카(공)	13	12	25	71	226	98	33	20	9	20	33	6	566
7	이탈리아	35	38	40	67	51	48	67	46	13	34	22	38	499
8	프랑스	63	35	24	65	36	16	28	35	53	34	14	38	441
9	일본	78	40	15	45	31	38	35	32	26	32	26	26	424
10	인도네시아	27	44	26	32	32	13	52	42	30	56	21	35	410
11	한국	22	44	26	32	32	13	52	42	30	56	32	23	404

자료 : FDA(www.fda.gov/ora/oasis/ora_ref_cntry.html)

2.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현황

1) 품목별 통관거부 현황

- 최근 3년간 한국산 상품에 대한 FDA의 통관거부 건수는 300~400건 사이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가장 많은데, 2007년에는 전년대비 61% 급증한 229건을 기록함.
- 최근 3년간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517건으로 FDA에 의한 한국산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4대 품목군 통관거부 건수의 절반이 넘으며, 의약품(22%), 의료기기(21.9%), 화장품(3.1%)이 뒤를 이음.
- 반면, 의약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118건(2005년) → 79건(2006년) → 19건(2007년)으로 급감했으며, 의료기기는 2006년 급증한 후, 2007년 크게 줄어 들었음.

〈FDA의 한국산 주요 품목군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³⁾〉

(단위 : 건, %)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합계	점유율
식품	146	142	229	517	53.0
의약품	118	79	19	216	22.0
의료기기	51	102	60	213	21.9
화장품	15	8	7	30	3.1
합계	330	331	315	976	100

주 : FDA는 연도별, 국별 통관거부 건수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며, 상기 자료는 FDA 내부분서를 자체 분석, 재집계한 자료임.

자료 : FDA

3) FDA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를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4대 주요 품목군에 한정해서 살펴봄.

- 통관거부 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쥐포, 굴, 복어, 멸치, 쫄면, 마른 오징어, 조개, 젓갈류와 같은 해산물(33.6%)에 대한 통관거부가 가장 빈번히 일어났으며, 드링크류(19.5%), 인삼제품(18%), 캔디류(17.2%) 등에 대한 통관거부가 뒤를 이음.
- 의료기기 중에는 마사지 기계(13.2%), 칫솔(11.3%), 흡수성 패드(11.3%), 치실(7.5%), 레이저 스킨케어 기기(7.5%)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많았음.
- 의약품 중에는 치약(46.2%)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은 노화방지 크림을 비롯한 크림류(50%), 일반 스킨케어 제품(38.8%)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많았음.

2) 품목별 주요 통관거부 사유

- 최근 3년간 한국산 상품에 대한 주요 통관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식품은 제조공정 정보 미등록(위반 코드명 No process⁴⁾), 의료기기는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D&C Act) 510조 (j)항에 따른 기기 미등록(위반 코드명 Not Listed), 의약품은 승인받지 않은 신약(위반 코드명 Unapproved),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링법 미준수(위반 코드명 CSTIC LBLG)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통관거부 사유로 나타남.

4) 한국산 식품은 No process가 가장 많은 반면, 중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코드는 Filthy(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제품에서 오물이 보이고 부패한 물질 또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함.)로서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FDA의 한국산 통관거부 사유〉

	2005년		2006년		2007년	
	위반 코드	건	위반 코드	건	위반 코드	건
식품	No process	31	No process	30	No process	30
	Needs FCE	23	Needs FCE	16	Needs FCE	16
	Unsafe Col	13	Unsafe Col	16	Unsafe Col	13
의료기기	Not listed	14	Not listed	25	Registered	18
	No 510(K)	10	No 510(K)	18	Not listed	18
	Registered	7	Registered	18	No 510(K)	10
의약품	Unapproved	64	Not listed	19	Unapproved	13
	Not listed	28	Unapproved	18	Not listed	13
	Personal RX	13	No English	12	No English	3
화장품	Labeling	3	CSTIC LBLG	2	CSTIC LBLG	2
	Directions	1	Unsafe color	2	Labeling	1
	No English	1	Held Insan	1	Directions	1

주 : 품목별로 상위 3개 통관거부 사유를 정리했으며, 위반 코드별 상세 통관거부 사유는
아래 표 참조

자료 : FDA

- FDA는 통관거부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위반 코드를 부여하며, 한국산 상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위반 코드와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음.

〈한국 상품의 주요 FDA 위반 코드와 관련 품목군〉

위반 코드명	통관거부 사유	주요 해당 품목군
CSTIC LBLG	화장품 라벨링법을 준수하지 않음.	화장품
Directions	제품 사용 관련, 적합한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의료기기, 화장품
False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음.	식품, 의료기기
Filthy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제품에서 오물이 보이고 부패한 물질 또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함.	식품
Health C	해당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건강효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식품

위반 코드명	통관거부 사유	주요 해당 품목군
Held Insn	화장품이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제조, 포장됨.	화장품
Labeling	제품의 라벨 위치, 정보 제공 형식과 내용이 '공정 포장-라벨링 법규'(FPLA: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를 위반함.	식품, 화장품
Lacks Firm	제품 라벨에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Lacks N/C	제품 라벨에 내용물의 무게, 개수 등 수량 파악이 가능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List Ingre	여러 가지 성분(Ingredient)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라벨에 각 성분의 이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Needs FCE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저산(低酸) 통조림이나 산화 음식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식품
No 510(K)	FD&C Act 510(K)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FDA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	의료기기
No English	영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No Process	21 CFR 108.25 (c)(2) 또는 108.35 (c)(2)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조공정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 (저산(低酸) 통조림이나 산화 음식 제조업체에 해당)	식품
Not Listed	FD&C Act 510(j) 조항에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	의료기기, 의약품
Nutrit LBL	제품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영양소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Personal RX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임.	의약품
Registered	21 CFR 807.20 (a)(4)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제품의 최초 유통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	의료기기
Salmonella	인체에 해로운 살모넬라균을 함유하고 있음.	식품
Unapproved	승인받지 않은 신약임.	의약품
Unsafe Col	안전하지 않은 색소 첨가제(color additive)를 함유하고 있음.	식품, 화장품

자료 : FDA

3) 통관거부 사례

- 뉴욕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 A씨는 19개 상자 분량의 식용 냉이에 대한 통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세관 직원으로부터 한 상자에서 흙과 함께 구더기가 발견되어 열아홉 상자 모두에 대하여 억류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받음.
- 식용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의 토양을 함께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포장이나 제품 유지방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이종 토양이나 씨앗이 미국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통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인삼의 경우, 인삼 뿌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장지 내에 흙을 같이 담을 경우,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관세사 A씨는 해당 세관을 방문하여 흙이 발견된 상자는 한 상자에 지나지 않고, 흙과 함께 발견된 구더기는 컨테이너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흙과 구더기가 발견된 한 상자만을 완전 폐기하고 나머지 18개 상자는 무사히 통관함.
- 이와 같은 통관거부 사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도 해당 사례⁵⁾를 찾아볼 수 있음.
- A사의 대구 알과 B사의 얼린 대구 알에서 고열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됨.
- C사의 마른 오징어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됨.
- D사의 말린 홍삼에서 농약이 검출됨.
- E사의 사탕과 F사의 치약은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함.
- G사는 고추장 용기에 영어 라벨을 부착하지 않음.
- H사는 다시마환을 수출하기 전에 FDA에 회사 등록을 하지 않음.

5) 미주 한국일보, 대한뉴스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함.

III.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 OASIS 사이트에 상품정보 사전 입력

- 미국 내 수입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FDA가 운영하는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 사이트에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히 입력해야 함.
- 세관 직원은 수입 화물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OASIS 기재 정보를 대조하는데, OASIS에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실제 검사과정 없이 바로 통관거부로 처리할 수 있음.
- 세관 직원 중 항만에서 근무하는 현장 말단직원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고지식하여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문서 내용과 본인들이 컴퓨터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FDA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바로 제품을 억류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의료기기는 510(K) 신고 필수

- 510(K)는 미국시장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FDA에 제출하는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단계로서, 신청자 현황, 제품 설명, 시험검사 성적자료, 생체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의 상당수가 시판 전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음.
- 특히 의약품은 정확한 라틴어 학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제품이 FDA의 검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검사 절차에서 FDA 직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른 업체에게도 FDA 통관거부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부주의 금물

- 현지 관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통관관련 문제 중 하나는 한국 일부업체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FDA 통관거부를 당할 경우,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우리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현지 관세사 적극 활용

- 미국 세관 및 FDA의 통관 규정과 세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세관의 통관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검증받은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또한 현지 관세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미국으로 수출하기에 앞서 현지 관세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 항만에서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미국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관세사 정보〉

업체명	기본 정보
EXCEL International of NY Corp	○ 주소 : 146-27, 167 St. #201, JAMAICA, NY, 11434 ○ 전화 : 1-718-244-0001 ○ 팩스 : 1-718-244-8834 ○ 이메일 : excel@excelny.com ○ 웹사이트 : www.excelny.com ○ 대표자 : 박재찬 관세사
B&H Customs Services Inc	○ 주소 : 147-19, Springfield Lane, JAMAICA, NY, 11413 ○ 전화 : 1-718-525-7050 ○ 팩스 : 1-718-525-7060 ○ 웹사이트 : http://bhchb.com ○ 대표자 : 박병열 관세사
김의만 관세사	○ 주소 : 177-17, 150th Ave. #203, JAMAICA, NY, 11434 ○ 전화 : 1-718-244-7770 ○ 팩스 : 1-718-244-7779 ○ 대표자 : 김의만 관세사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 아프리카 선도시장 유망품목 및 진출확대 방안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작성자

김문영 (뉴욕 무역관)

김준규 (구미팀)

Global Business Report 08-014

미국 FDA의 통관정책과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